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

2023.2.7

**1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기본방향**

---

**2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세부 과제**

---

**3 추진 계획**

---

#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기본방향



#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기본방향



✓ 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며, 글로벌 수준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역외 원화시장 개설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 ✓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 \* 현물환 + FX 스왑거래
- \*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화 (거래 모니터링)

## 개장시간 대폭 연장

- ✓ 1단계로 한국시간 02시까지 연장 (런던장 마감시간)
- ✓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보가며 24시간까지 확대

##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 對고객 전자거래 활성화 +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Aggregator) 도입
- ✓ 제3자 외환거래 허용

## 국내 금융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 ✓ 본지점간 직거래 허용 및 원화차입 신고의무 면제
- ✓ 국내기관이 RFI의 신고 및 보고업무 대행 허용
- ✓ 국내기관-RFI간 규제 적용 등의 차이 보완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 ✓ 국내기관의 對RFI 선물환 포지션 비율 별도 관리 검토
- ✓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 직접 통제 방안 마련
- ✓ 실효적 감독체계 구축

3대 정책과제

보완방안

공론화, 법령 개정, 국내 금융기관 준비 등 거쳐 **이르면 '24.下 본격 시행**

# 외환시장 구조 개선 세부 과제



# 1.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1/3)



##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인가 대상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

\* 국내 업권법 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지점

상기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

\* (예) 외환전문투자회사(예 PTF, Principal Trading Firm)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여 불가

인가 요건

###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 부과

1 적정 유동성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Credit Line) 확보

\* (산정방식 예시) RFI와 Credit line을 개설한 기존 참여기관들의 거래량 / 전체 시장 거래량  $\geq$  일정 수준

2 식별정보 확인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예:LEI<sup>1)</sup>), 국내 원화결제에 위한 계좌<sup>2)</sup> 개설 여부 등

1) 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11년 G20 도입) 2) 구조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원화는 해외에서 결제될 수 없음 → 원화결제용 계좌 개설 필요

3 규제동등성 평가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

\* (EU 사례) EU 위원회에서 규제동등성 평가,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이 제3국 감독당국과 협정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3국 소재 투자업자의 역내 투자서비스 제공 인가

4 의무이행 확약

법령상 의무 준수<sup>1)</sup> +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sup>2)</sup> 협조 +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시 인가 직권취소 등

1) 외국환거래법령상 시세조작·건전거래 훼손 금지, 신고·확인 의무 등 2) 통계·감독 목적의 거래관련 정보, 경영현황, 본국 규제준수 여부 등

# 1.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1/3)



##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 개방 범위

현물환



FX 스왑거래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구조 개선방안 시행 후 추후 판단

✓ RFI에게 은행간 시장내 현물환 + FX 스왑거래\* 허용

\* 현물환율로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하고 만기도래시 계약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이하 단기 외화자금거래

- 시장참여자로서 RFI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sup>1)</sup>하고, 해외시간대 유동성 확보<sup>2)</sup>를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

1) 글로벌 투자기관은 국내 투자시 현물환 외 환헤지를 위한 FX 스왑거래도 필요

2) '10년 이후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NDF 거래 비용 상승 → 해외투자자들은 NDF 시장보다 국내시장 직접 거래를 희망

-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역내외 고객 모두와 현물환·FX스왑거래 가능

-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 개방 여부는 구조 개선방안 시행 후 시장여건, 거래수요 등 감안하여 추후 판단

# 1.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1/3)



##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 모니터링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

\*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1로 직접 거래시, 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역외 원화시장 개설되는 결과임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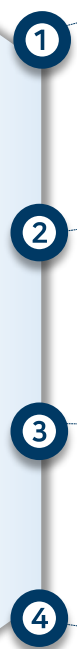
### 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 및 결제 절차

거래상대방  
(RFI 또는 국내 금융기관)

국내인가  
외국환중개회사

RFI

국내 금융기관  
(RFI의 결제계좌 보유)



1 RFI가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현물환·FX스왑 거래

2 국내 외국환중개사는  
RFI에 거래체결 내역서 전송

3 RFI는 거래체결 내역서를 확인하고,  
결제 계좌가 있는 국내은행에  
동 서류를 첨부해 결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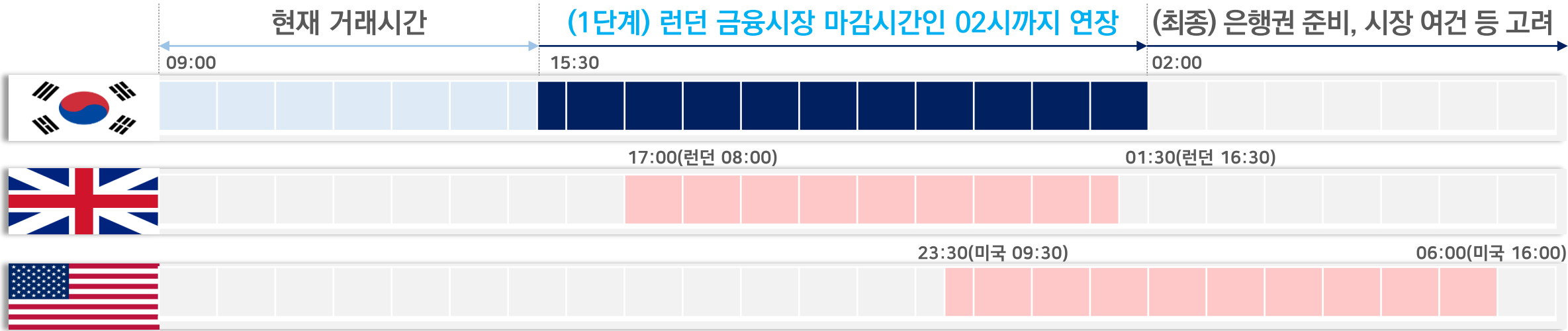
4 국내은행은 거래체결 내역서상 총액과  
RFI의 결제 요청 금액을 비교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에만 결제 실행



## 2. 개장시간 대폭 연장 (시장 자율규제 사항)



###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까지 대폭 연장 (15:30 → 익일 02:00)



#### 연장 범위

국내 은행권의 준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한국 시간 02시까지 우선 연장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보가며 24시간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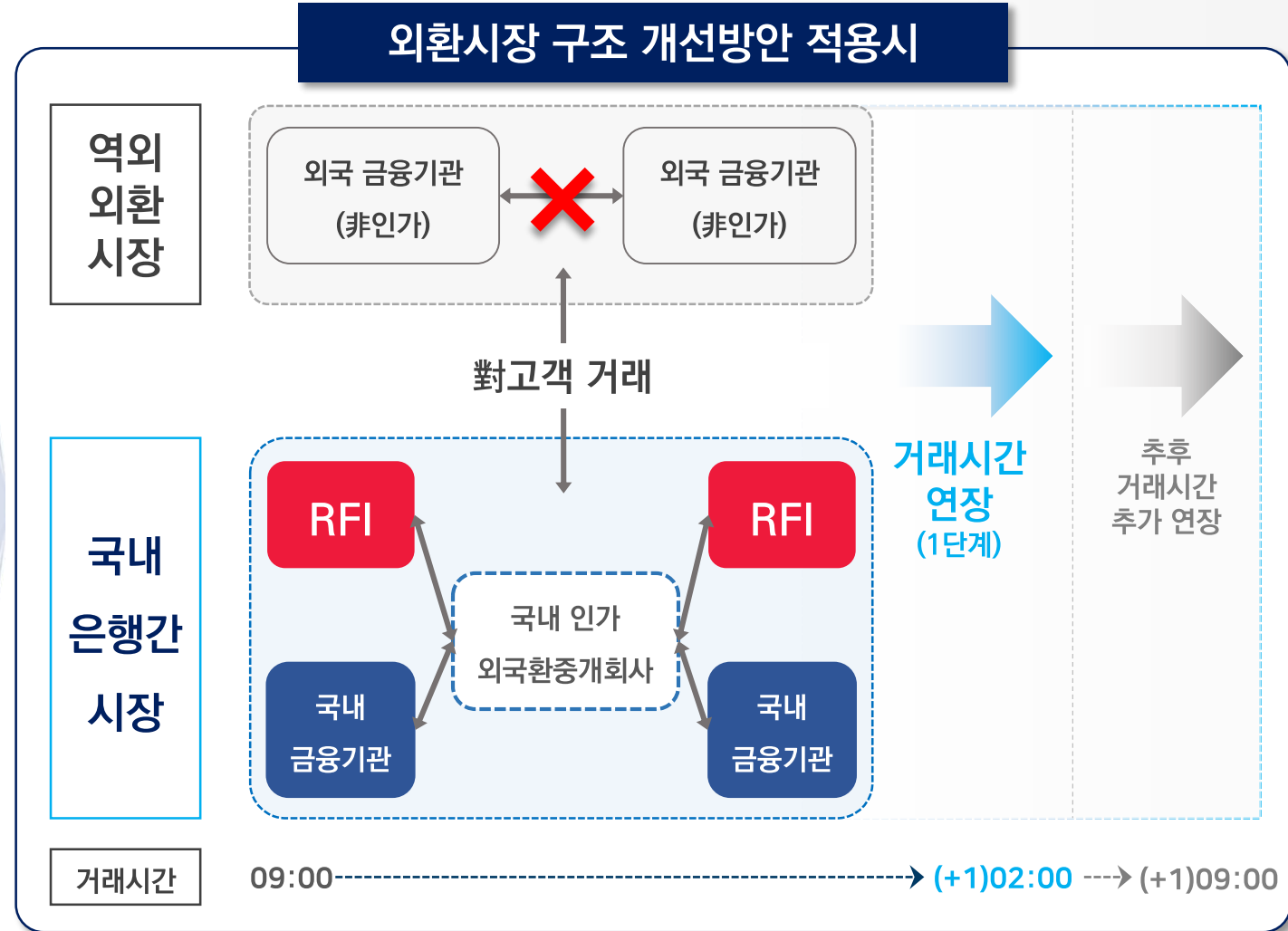
#### 벤치마크

매매기준율<sup>1)</sup>은 현재와 같이 09:00~15:30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sup>2)</sup>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

1) 前거래일에 거래환율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법인 외화자산·부채 평가,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 NDF 차액정산 등 활용

2) (예) 15시반 체결가(現 종가), 02시 마지막 체결가,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

# ※ [참고] 외환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시 국내 외환시장 구조



###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1/3)



##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

① 전자거래

② 제3자 외환거래

③ 동시결제 및 ④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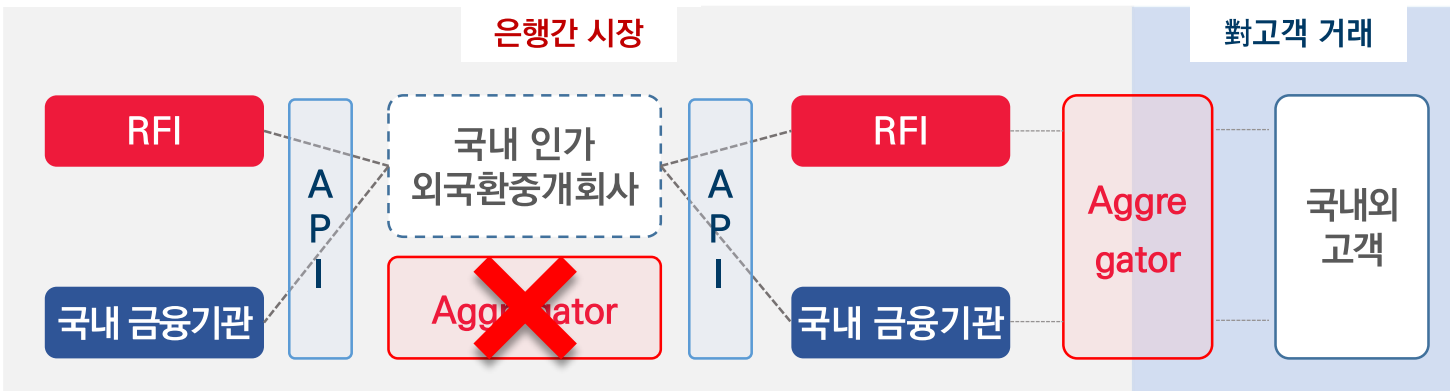
✓ (인프라)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 가능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다른 소프트웨어간 데이터 교환 표준방식 → API를 통해 외국환중개회사·은행·對고객 전자플랫폼 등 분리된 시스템간 거래정보 실시간 교환 가능

✓ (플랫폼\*)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對고객 외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개별 플랫폼(은행별 전자거래 플랫폼), 공동플랫폼(다수 은행이 플랫폼 공동구축), 對고객 전자중개회사(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하여 은행-고객 거래를 중개)로 구분

#### < API, Aggregator 도입 후 거래 구조 >



- 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은 API를 통해 외국환 중개회사로부터 실시간 호가 수신
- ②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은 Aggregator를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가격 제공
- ③ 고객은 Aggregator를 통해 은행별 가격을 확인
- ④ 고객은 최적 가격 은행을 확인하고 거래 체결

# ※ [참고]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 도입 방안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허용 범위

**등록** 당국에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로 사전 등록  
→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은 등록된 기관을 통해 對고객 서비스 가능

**제한**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간 거래 중개는 불가, 이에 따라  
은행간 시장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인  
자동 스트리밍(Non-Disclosed Streaming) 방식\*은 불허

\*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

**보고**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가 당국에 거래내역 사후 보고



허용	채팅	당사자간 메신저로 가격 확인, 주문, 거래체결
	RFQ (Request For Quotation)	고객 호가 요청 → 은행별로 고객에 호가제시 → 고객은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 거래 체결
	Disclosed Streaming	은행이 고객에 지속적 호가 제시 →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 거래 체결
제한	Non-Disclosed Streaming	은행이 고객에게 지속적 호가 제시 →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없이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 체결

###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2/3)



##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

① 전자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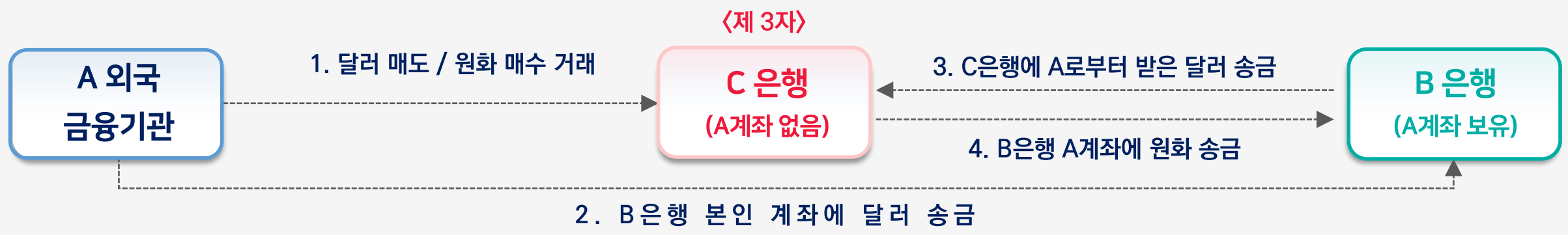
② 제3자 외환거래

③ 동시결제 및 ④ 보고

✓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 ('22.12월 既 발표)

- \*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 발생 (계좌 개설·관리 부담으로 외환거래의 상대방이 제한되면서 경쟁적 거래 불가)
- \*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

#### < 제3자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예시 >



###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3/3)



##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

① 전자거래

② 제3자 외환거래

③ 동시결제 및 ④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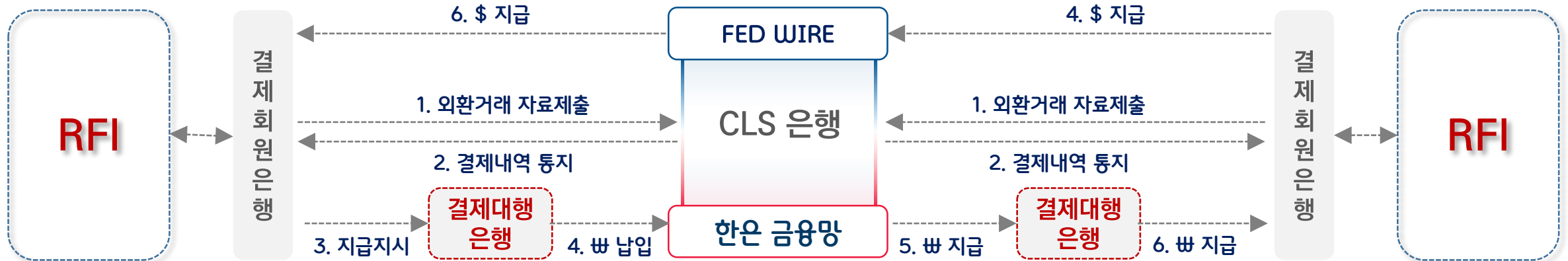
✓ (동시결제) RFI가 CLS<sup>1)</sup> 국내 결제대행은행<sup>2)</sup>(現 9개 은행)에 결제계좌<sup>3)</sup> 개설시,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1) 외환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해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간 시차 없이 통화별 차액만 결제

2) 한은 금융망에 접속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 대행 3) 실제 국내 증권·외환 관련 영업중인 대다수 글로벌 금융기관이 同 계좌 보유

✓ (보고) RFI가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 내역 등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 보고시스템 마련

〈 CLS 동시결제 예시 : RFI간 거래를 한 경우 〉



## 4. 국내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



### 국내 금융기관에 거래·행정 등 지원 및 규제 적용 등 차이 보완

#### 거래

본점-지점\*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 원화차입 신고의무 면제

\* [범위] ①외은지점-동일그룹 RFI, ②국내본점-동일그룹 해외 법인·지점(RFI로 인가)

RFI가 국내 외은지점·본점을 통해 영업편의를 제고\*하고 원화 유동성도 용이하게 조달 가능

\* RFI가 해외 시간대 거래 이후 남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 직거래로 국내 외은지점·본점에 남은 포지션 이관 가능

#### 규제

국내기관과 RFI간 영업 및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의 차이는 시장 수요·여건 등을 보가며 필요시 개선\*

\* (예) <現> 국내본점의 해외법인 원화대출은 신고, 해외지점 원화대출은 신고면제  
<改> RFI로 인가받은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본점의 원화대출 신고면제

#### 행정

RFI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 동일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보고 업무\* 대행 허용

\*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당국에 대한 보고 등

#### 보완

국내지점이 없는 RFI는 선도은행\*에 신고·보고 등 업무위탁 허용,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시 신고면제

\* 시장구조 개선에 대비, 국내 기관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양방향 거래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은행 선정, 인센티브 제공('22년 도입)



## 5.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RFI 참여가 시장불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 컨틴전시 플랜 보완, 실효적 감독방안 마련

#### 거시건전성 : 기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보완

- ✓ 예를 들어,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sup>1)</sup>와 별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관리<sup>2)</sup>하는 방식 등 검토

1) 선물환純포지션 / 전월말 자기자본 ≤ (국내은행)50%, (외은지점)250%

2) 다만, 평시에는 모니터링에만 활용하며, RFI에 의한 시장불안 우려 발생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규제비율로 적용

#### 컨틴전시 :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 ✓ 외국환거래법령에 RFI의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의 수단, 절차, 범위, 기간 등을 명확화



#### 실효적 감독 :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 구축

- ✓ 불법거래, 신고 등 의무위반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직접 또는 위탁감사 등 실시



# 추진 계획



# 추진 계획



##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 이르면 '24.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

2023년

2024년



### 외국환 거래법 개정

- ✓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정립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23.3/4분기 중 국회 제출**

### 국내 금융기관 준비

- ✓ 관계기관(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 구성·운영**
  - \*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지원, 국내 전자거래시스템 확산 노력 강화
  - \* 추가 규제화 필요과제(RFI 인가요건 상세기준, 규제 역차별 해소, RFI 자본거래 통제 방안 등)는 작업반 논의를 통해 보완·확정

### 해외 투자자 홍보

- ✓ 주식·채권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함께 **해외투자자 대상 범부처 합동 로드쇼 '23.2/4분기중 추진**

### 정식 시행

- ✓ 외국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조사 바탕으로 6개월여 시범운영, **'24.하반기 정식 시행**
  -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결제 및 거래내역 보고 프로세스, 당국의 모니터링·감독 상이슈 등을 점검·보완
  - \*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보고·결제 관련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치유 허용